

요약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9건의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9건 모두 계류 중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 한해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② 통합방위사태나 군사훈련 중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제한하여 보상권을 보장하며, ③ 보험금 청구 절차의 공정성과 보험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9건의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9건 모두 계류 중임

-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보험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 한해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을 허용하는 법안이 5건, 통합방위사태 및 군사훈련, 적(敵)의 위해행위 등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예외 법안이 2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공정성과 보험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2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여, 불의의 사고나 공공 목적의 시민안전보험, 학생단체보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태풍 힌남노(HINNAMNOR) 피해 당시 포항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가 사망했음에도 유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사고 등 시민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한해서는 15세 미만자의 사망도 보험사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의안번호 2203724)
-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 방지를 위해 설정된 제732조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15세 미만자가 재난, 감염병,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의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의안번호 2206188, 의안번호 2207482)
-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의안번호 2207941)
- 2015년 논산시의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는 단체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바, 학교나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 학습이나 단체활동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의안번호 2211755)

- 북한의 도발 행위나 군사훈련 중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해 「상법」 제660조 ‘전쟁 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 회사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보험회사가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북한의 대남전단살포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전쟁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방위법상 침투도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 면책에서 제외함(의안번호 2200922)
 - 공군의 MK-82 투하 훈련 중 오폭 등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가 전쟁 면책 조항으로 인해 보상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전쟁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 주인의 정당한 보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의안번호 2210053)
- 보험금 청구 지연 및 소멸시효 만료 등으로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계약 해지 요건을 합리화하여 보험계약상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너무 짧고 시효 기산점인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는바,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험료·적립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도 5년으로 함께 연장하고자 함(의안번호 2203036)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함(의안번호 2205129)
- 이상의 9건의 상법(보험편) 개정안을 종합해 보면, 보험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1〉 22대 국회 상법(보험편) 개정안 발의 현황(2024. 6~)

번호	접수정보	주요내용	분류
1	2200922 2024. 6. 25. 민형배 의원	<p>[배경] 최근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나 오물 풍선 투척 등으로 차량 파손과 상해 등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험법 체계에서는 ‘전쟁 기타 변란’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어 피해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p> <p>[개정사항] 보험사고의 원인이 「통합방위법」 제2조 제9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외국의 무력공격, 무력공격 임박, 대규모 도발, 경계대피 조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660조)</p>	전쟁 면책 조항 예외

〈표 1〉 계속

번호	접수정보	주요내용	분류
2	2203036 2024. 8. 21. 최은석 의원	<p>[배경] 현행법상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임. 특히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에 청구했음에도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청구권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임</p> <p>[개정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651조)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기존에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청구권자가 그 권리 발생을 안 날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면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662조 제1항) 3.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료청구권은 현행대로 2년을 유지함(안 제662조 제2항 신설) 4.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62조 제3항 신설) 5.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동의를 전제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안 제731조 제3항 신설)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3	2203724 2024. 9. 5. 박상혁 의원	<p>[배경]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해 시민안전보험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도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p> <p>[개정사항] 학교나 청소년 단체가 주관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 중 발생한 사망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15세 미만자의 사망도 보험사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2조)</p>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허용
4	2205129 2024. 10. 31. 전재수 의원	<p>[배경]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체결되지만 보험설계사에게는 법적으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권이 없어 계약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p> <p>[개정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 명확히 제한함(안 제651조 제1항) 2. 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안 제651조 제2항 신설) 3. 현행법은 보험대리상에 대해서만 보험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인정해왔으나,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의 보험설계사도 포함시켜 계약 체결, 변경, 해지, 보험료 수령 등 보험계약과 관련한 의사표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함(안 제646조의2) 4.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추정'하던 규정은 삭제하여, 고지의무 판단에 있어서 추정 규정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제거함(안 제651조의2 삭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표 1〉 계속

번호	접수정보	주요내용	분류
5	2206188 2024. 12. 3. 박준태 의원	[배경] 2022년 포항시의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한 15세 미만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 규정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족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재난이나 단체활동 중의 불의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허용
		[개정사항]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이나 학교 및 청소년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2조)	
6	2207482 2025. 1. 14. 강득구 의원	[배경] 태풍 힌남노(HINNAMNOR)나 항공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시민안전보험 등의 공공보험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허용
		[개정사항] 15세 미만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 확보를 위해 체결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유효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732조)	
7	2207941 2025. 2. 6. 김은혜 의원	[배경]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15세 미만자가 사망했음에도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커짐. 현행 제도는 보험사기 방지라는 목적은 있지만 재난·사고와 같은 현실적 위험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 처리하는 한계가 있음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허용
		[개정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체결하는 단체보험에 한해, 재난·감염병 또는 단체활동 중 발생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보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32조)	
8	2210053 2025. 4. 23. 백선희 의원	[배경]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이나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 대상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나 공군 훈련 중 오폭 피해 등에서 보험업계가 ‘전쟁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 거부를 검토한 사례가 논란이 됨.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의 중재로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이 여전해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함	전쟁 면책 조항 예외
		[개정사항]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60조 단서 및 제1호·제2호 신설)	
9	2211755 2025. 7. 25. 황명선 의원	[배경]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민안전보험과 학생단체보험에 서조차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해, 공공 목적의 보험에서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허용
		[개정사항] 학교, 청소년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자가 단체활동, 재난·감염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함	

주: 1) 2024. 6. 5.~ 2025. 7. 25.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법안임

2) 접수정보는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자임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